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제·구매목표제에 있어 국산비율 규정〉
■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33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중오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9. 12.
3. 회 부 일 : 2025. 9.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제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국내생산 차량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에 따른 구매목표를 지정하는 경우에 국내생산 차량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 ----- ----- ----- ----- ----- ----- ----- -----

정부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785만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¹⁾ 전기자동차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2021년 연간 10만 475대의 전기자동차가 등록되던 것이 2025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 3,623대의 전기자동차가 등록되는 등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전기자동차 신규등록 현황

(단위: 대)

구분	'21	'22	'23	'24	'25 상반기
전기승용차	71,619	123,942	115,833	122,711	80,381
국산	46,213 (64.5%)	85,497 (69.0%)	72,660 (62.7%)	73,096 (59.6%)	47,819 (59.5%)
외국산	25,406 (35.5%)	38,445 (31.0%)	43,173 (37.3%)	49,615 (40.4%)	32,562 (40.5%)
전기승합차	1,291	2,080	2,821	3,620	1,184
국산	794 (61.5%)	1,207 (58.0%)	1,293 (45.8%)	2,293 (63.3%)	802 (67.7%)
외국산	497 (38.5%)	873 (42.0%)	1,528 (54.2%)	1,327 (36.7%)	382 (32.3%)
전기화물차	27,565	38,476	43,942	20,581	12,058
국산	27,491 (99.7%)	36,707 (95.4%)	41,183 (93.7%)	18,479 (89.8%)	10,829 (89.8%)
외국산	74 (0.3%)	1,769 (4.6%)	2,759 (6.3%)	2,102 (10.2%)	1,229 (10.2%)
전체	100,475	164,498	162,596	146,912	93,623
국산	74,498 (74.1%)	123,411 (75.0%)	115,136 (70.8%)	93,868 (63.9%)	59,450 (63.5%)
외국산	25,977 (25.9%)	41,087 (25.0%)	47,460 (29.2%)	53,044 (36.1%)	34,173 (36.5%)

자료: 국토교통부

1)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2021.2.

한편으로 2021년에 0.3%에 불과하던 외국산 전기화물차의 비율이 2025년에는 34배에 해당하는 10.2%로 증가하고, 전체 전기자동차 중 외국산의 비율이 2021년에서 2025년까지 4년 동안 25.9%에서 36.5%로 증가하는 등 전기자동차 중 외국산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하여 미국·중국 등 자동차 주요생산국에서 자국산 자동차에 대한 우선구매·보조금 지원 또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 중인 상황으로,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지역에 최종조립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²⁾, 중국의 경우 관련 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국산 차량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이와 관련하여 자국 산업 보호정책에 대해 통상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무역규범 위반을 이유로 WTO에 제소하였고⁴⁾, 유럽연합은 중국의 자국 전기자동차 우대정책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상황임⁵⁾.

2)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3)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中華人民共和國政府採購法) 및 「신에너지자동차 정부조달 비율 요구사항을 한층 더 명확히 하는 통지」(關於進一步明確新能源汽車政府採購比例要求的通知)

4) AP, 「China to challenge Biden's electric vehicle plans at the WTO」, 2024.3.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제와 구매목표제를 적용하는 경우 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국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자국산 친환경 자동차 구매유도정책이 동시에 타국과 통상 마찰 또는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당사국 상품을 국산 상품과 법령상 차별대우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점⁶⁾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부는 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을 위한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통상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매비율 법정화 대신 보조금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0

5) EIAS · UEA, 「The EU's Anti-Subsidy Policy Towards Chinese Electric Vehicles」, 2024.7.

6) 대법원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판시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4추72 판결)